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893, 894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금 번 공고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업무 개선 및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 개정 이유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업무 개선 및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위함.

### II. 개정 내용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가.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7조 개정)

-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

##### 나.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안 제18조 개정)

-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안전확인신고 등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 안전인증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확인신고(변경 포함) 발급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안전확인신고시 추가 기술검토 절차 생략

##### 나.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조정(안 제38조, 제49조, 제52조 개정)

- 안전인증기관이 운영중인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의 행정처분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 III. 의견제출

#### 1. 제출기한

- 2024년 2월 24일 까지

#### 2. 제출방법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위 제출기한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 : 전화. 043-870-5441, 팩스. 043-870-5676, 이메일. [kihj76@korea.kr](mailto:kihj76@korea.kr)
-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043-870-5441, 팩스 043.870-5676)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입법예고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제2023-893호)

[붙임2] 입법예고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제2023-894호)

[붙임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붙임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붙임5]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

[붙임6] 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

[붙임7]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8]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Contact



박영기 관세사

T 070-4353-1531  
E ykpark@esein.co.kr



이재훈 관세사

T 070-4353-1553  
E jhlee2@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